

의안번호	제 294 호
의 결 연 월 일	2008년 월 일 (제 회)

충청북도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제 출 자	충 청 북 도 지 사
제출연월일	2008년 11월 13일

법무통계담당관 심사필

충청북도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의안
번호

294

제출연월일 : 2008년 11월 13일

제 출 자 : 충 청 북 도 지 사

1. 제안이유

최근 공직자의 종교편향 행위 논란으로 국민화합에 영향을 끼침에 따라 이를 해소하고, 주민전체에 대한 봉사자로서 보다 공정하게 직무를 수행할 수 있는 여건 조성으로 불편부당하게 봉사하는 공무원상 정립 및 국민화합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임

2. 주요내용

□ 공무원의 종교적 중립의무 명시(안 제5조제3항 신설)

지방공무원법 제51조(친절·공정의 의무)에 근거하여 공무원이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종교 등에 따른 차별 없이 공정하게 업무를 수행하도록 명시

3. 의안전문 : 붙임

4. 신·구조문 대비표 : 붙임

5. 관련법령 발췌 : 붙임

6. 입법예고 결과 : 의견 없음

충청북도조례 제 호

충청북도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충청북도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5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- 제5조(친절·공정) ① 공무원은 공과 사를 명백히 분별하고, 주민의 권리를 존중하며, 친절하고 신속·정확하게 모든 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.
- ② 공무원은 주권을 가진 국민의 수임자로서 국민의 신임을 획득하기에 노력하여야 한다.
- ③ 공무원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종교 등에 따른 차별 없이 공정하게 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.

부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·구조문 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5조 (친절·공정) ①공무원 은 공과 사를 명백히 분별하 고, 주민의 권리를 존중하며, <u>친절·공정</u>하고 신속·정확하 게 모든 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. ②공무원은 주권을 가진 국민의 수임자로서 국민의 신임을 획득 하기에 노력하여야 한다. <신 설>	제5조 (친절·공정) ①공무원 은 공과 사를 명백히 분별하 고, 주민의 권리를 존중하며, <u>친절</u>하고 신속·정확하게 모든 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. ② (현행과 같음) ③공무원은 직무를 수행함에 <u>있어서 종교 등에 따른 차별 없이 공정</u>하게 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.

관 계 법 령 발 취

□ 지방공무원법

제51조(친절·공정의 의무) 공무원은 주민전체의 봉사자로서 친절하고 공정하게 직무하여야 한다.